

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6. 25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조남문

1. 발 의 자: 박영희 의원

2. 제안이유

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, 건강식단 제공,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국민의 권리 및 영업자의 의무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건강음식점의 인증 및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협조부서: 보건위생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5. 25. ~ 5. 30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

-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였고,

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

- 국민의 권리와 영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

-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,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우리 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「식품위생법」 등 상위법령에 따른 정기·수시 점검과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, 영업장 시설관리,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범음식점, 성동 맛집 등으로 지정하고 인증하여 표지판 부착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,

- 한 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먹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·시비 보조사업 ‘서울형 안심식당’ 추진을 위해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구비부담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.

- 이처럼, 본 조례안은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예산 확충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< 관련법규 >

붙임 1	「식품위생법」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<p>제47조(위생등급)</p>	<p>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</u>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<u>총리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붙임 2	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<p>제21조(영업의 종류)</p>	<p>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8. 식품접객업</p> <p>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붙임 3	「국민건강증진법」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<p>제3조(책임)</p>	<p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	--